

2011년도 등록세와 취득세가 통합되어 통합취득세로 과세하기 이전에 취득된 물건을 등기하기 위해 신고하는 경우는 구법 적용으로 구(舊) 등록세 화면에서 등록세만 과세하고 취득세는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과세하지 못한다.

취득세 과세	등록세만 선택해서 과세/ 가산세는 없다 등록분과 취득분을 구분하여 과세해야는데 취득세분(2%)은 부과제척기간 5년경과로 과세할수 없다. 그래서 세율은 3.16% → 0.96% 적용된다.
과세시 화면 위치	구부과관리- 취득등록세(부동산)-신고분관리-부동산(신고분) 화면에서 세목구분은 등록세로만 한다/
주택공시가격의 시점	등록시점인 현재시점. 안나타나면 주택공시가격 돌보기창에서 불러온다. 상가/사무실은 자동으로 현재시점으로 되는듯
시가표준액 불러오기	상속미등기는 건물과 토지를 다 불러오지만 신축보존등기는 토지는 제외하고 건물만 불러오는 것 유의
취득일자	=준공일자 / 상속은 사망일자
고지서	2번고지서를 따로 셋팅해서 출력한다.

<주로 상속 미등기>가 제일 많고 가끔 미등기 건물 신축보존등기도 있다.